

제4차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집행위원회 회의

- 일시 : 2003. 5. 28.(수) 오후 3:00 , 장소 : 백범기념관 교육장2
- 구성단체 : (가나다順)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 기독교변호사회 · 노들장애인가간학교 · 다우회 · 대전장애인총연합회 · 대한의수족연구소 ·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 밀알복지재단 · 부름의전화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서울곰두리봉사회 ·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 수레바퀴재활문화진흥회 · 스카이크로벳 · 열린네트워크 · 울산장애인총연합회 ·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장애시민행동 · 장애여성문화공동체끼판 · 장애여성문자조모임다올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인문화사랑국민운동본부 ·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 전국산재장애인단체총연합회 · 천라북도신체장애인협회 · 청신지체인전국부모연합회 · 청태수열사추모사업회 · 제주장애인총연합회 ·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프랜드케어 · 푸른하늘 · 태화샘솟는집 ·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한국농아인협회 · 한국뇌성마비복지회 ·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회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한국신장장애인협회 ·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 · 한국작은키(연골무형성증)모임 ·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 한국장애인부모회 ·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 한국재가장애인협회 ·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 한벗장애인이동봉사대. (51)

정영석 기

I. 진행보고

1. 재정보고
2. 법제정전문위원회 경과보고
3. 2003선언 및 서명운동 경과보고
4. 토론회 개최

II. 안건논의

1. 운영규정안 승인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운영규정(안) 참조
2. 2003 전체사업계획(안) 승인 : 2003사업계획서 참조
3. 기타

III. 공고

I. 진행보고

1. 제정보고 : 기획분과 보고 (결산서 참조)

- 분담금 미납단체 : <국민은행 : 816901-04-003603 : 김미연(장차법제정추진연대)>

☐ 9만원 :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다운회, 대전장애인총연합회, 대한의수족연구소, 밀알복지재단, 부름의전화,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서울곰두리봉사회, 섬김과나눔회장애인봉사대, 스카이콜벤, 울산장애인총연합회, 인천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시민행동, 장애인문화사랑국민운동본부,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전국산재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전라북도신체장애인협회,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장애인총연합회, 푸른하늘, 태화샘솟는집, 한국뇌성마비장애인연합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재가장애인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한벗장애인이동봉사대.

☐ 15만원 : 장애여성문화공동체 기관, 한국교통장애인협회

☐ 21만원 : 노들장애인야간학교

2. 법제정전문위원회 경과 보고 : 장추련 법제위 경과보고 참조

- 총칙기구팀,차별금지팀,권리구제팀,여성팀의 4개 주제별로 팀을 나누어서 세미나가 계속 진행중이며, 각 팀별 팀장과 간사로 구성되는 실행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조율과 종합이 이루어질 예정임.
- 부위원장으로 김광이, 안선영 님, 간사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이수지 님이 활동하고 있고, 카페 장애인법연구모임(<http://cafe.daum.net/KDA2003>)을 통해 회의록과 연구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음.
- 1년 전체에 걸쳐 첨부하는 사업계획안을 세움

3. 2003선언 및 서명운동 경과보고

- 실무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획분과를 맡은 장추련 중심으로, 몇 개의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소화가능한 정도의 선언지와 서명용지를 배분해 간 상태이나 취합이 안된 상태임.
- 지난 제7차(5.13)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구성단체의 참여를 보장, 독려하기 위해 제3그룹의 최영목 상임집행위원을 추진본부장으로 위촉하여 진행하고자 결의가 됨.

4. 토론회 개최

- 구성단체 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준비한 5.16(금)<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토론회

- “장애인차별 무엇이 문제인가? - 2002 인권센터 상담분석을 통해 본 차별실태와 대응방안- 를 장추련이 주최하고 연구소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진행함.
- 장추련의 이름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운동의 흐름을 알리고자 연구소의 동의를 얻어 진행함.
 - 상임집행위원회에서는, 구성단체들이 장애인 차별 관련 대외적인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장추련의 이름을 함께 걸고 진행하는 방안 등의 제안이 있었음.

II. 안전논의

1. 운영규정안 승인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운영규정(안) 참조

- 김미연 기획분과장이 발의한 운영규정 초안과 장총이 수정제안한 연대운영 지침안의 조문을 축조심의하고 법제위원장이신 박종운 변호사가 최종검토하여 첨부하는 규정안을 성안하여 상정하게됨.

2. 2003 전체사업계획(안) 승인 : 2003사업계획서 참조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제정전문위원회 - 6.11 공청회 사업기획안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국토순례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2003 선언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참여단체 실무자 워크숍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홈페이지(홈페이지 구축사업)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외 협력사업

3. 기타

III. 공고

- <장애인차별실태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가 6.11(월)에 개최됩니다.

2003 공동선언 서명자 명단

연번	성명(단체명)	입금액
1	박춘우(장충련)	10,000
2	강민수(한국장충)	10,000
3	김미연(장충련)	10,000
4	이인영(한국장충)	10,000
5	유흥주	10,000
6	신용호	10,000
7	조옥	10,000
8	장기철	10,000
9	조영길	100,000
10	최병권(작은키)	10,000
11	공의철(작은키)	10,000
12	안상희(작은키)	10,000
13	서정화(작은키)	10,000
14	황찬연(작은키)	10,000
15	김경호(작은키)	10,000
16	허도일(작은키)	10,000
17	김동원(작은키)	10,000
18	이정선(작은키)	10,000
19	이안재(작은키)	10,000
20	황중철(작은키)	10,000
21	박종훈(작은키)	10,000
22	송면중(작은키)	10,000
23	이옥현(열린넷 22명)	220,000
24	진홍	10,000
25	최영목(수레바퀴)	160,000
계	700,000원	

장충련 통장(국민은행 816901-04-003603) 입금액 : 4,250,000

잔 액 : 1,548,901

장추련 법제위 경과 보고

- 4차 집행위원회 제출용(2003. 5. 28)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일정

- 2003. 5월 중, 법안 개요 확정
- 2003. 9월 말, 개요를 기반으로 1차 초안 완성(1차 내부세미나 진행)
- 12/3 or 2004년 1월 경, 2차 초안 완성(9월 이후 지속적인 공청회 진행)
- 12월 ~ 2004년 총선 前, 장차법 공약화 추진(각 정당, 국회의원 입후보자 대상)
- 2004. 4/15 장추련 일주년 기념식 즈음 법안 최종안 상집위 통과, 총선 겨냥 공약화 완료
- 2004년 6월 ~ 9월,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 목표
- ※ 장차법 제정을 위한 국토순례(2003. 여름) - 경유지에서 문화행사, 간담회 등 진행
- ※ 9월 이후 초안 관련 간담회, 공청회 진행, 9월 이전에는 개요에 관한 간담회, 공청회 개최

2. 간담회 전체 계획(안)

- 1. 공청회: 장애인차별실태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 2. 간담회: 장애인법의 목적과 체계
- 3. 간담회: 차별실태(접근권·생활시설, 교육)
- 4. 간담회: 차별실태(고용, 성, 재화·용역·시설)
- 5. 간담회: 여성팀
- 6. 간담회: 시정명령, 입증책임의 전환
- 7. 간담회: 집단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 8. 간담회: 사회적차별금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 9. 간담회: 비용분석, 기타
- 10. 공청회

3. 6월 11일 공청회 사업계획안(법제위원회: 8차 상집위 제출용)

1) 사업목표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대내외에 알린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추진연대의 활동을 알린다
- 장추련에 참여하고 있는 개별 단위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연대 내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2) 사업내용

- 행사명: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 일시 : 2003년 6월 11일 오후 2시 - 5시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 인원 : 200여명

3) 사업추진 계획 및 역할 분담

○ 사회: 박중운 법제정위원회 위원장

순서	식명	내용	소요시간	섭외 담당
1	사례 발표(이 중 순서대로 섭외하되 섭외되는 대로 4-6명 발표)	㉠ 서울대 건 (51세 대학생) ㉡ 시설(오영일) ㉢ 노동(4층으로 부서 이동) ㉣ 가족간의 차별(박주희) ㉤ 의사소통(정신지체 1600원) ㉥ 듣기평가(윤정기) ㉦ 통합교육 거부 ㉧ 운전면허(안형진) ㉨ 보험 차별(오영일)	각 5분씩	박숙경 박숙경 박숙경 김광이 박숙경 농아인협회 박숙경 박동렬 박숙경
2	장차법이 주는 역사적 함의	장애관련법의 문제해소방안	10	상집위 논의
3	장차법 제정 방향	장차법의 기본 내용 중심으로	10	법제위 논의
4	다른 차별금지법 제정운동	여성 차별, 비정규 차별	5분씩	조옥, 박옥순
5	보건복지부, 인권위원회	각기 차별금지법 준비상황	5분씩	장충, 장충연
6	종합토론			

4) 세부 사업 일정

	5/21 - 24	5/25 - 31	6/1 - 4	5	6	7	8	9	10	11
발제자, 토론자 섭외										
수화통역 섭외										
포스터 및 초청장 제작, 발송										
플래카드 발주										
원고 취합										
자료집 편집, 인쇄										
홍보(보도자료 배포, 기타)										
당일 행사 준비										

5) 기대효과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공유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활동 홍보
- 장추련 개별 단위의 활동 역량 강화, 연대 내 의사소통 활성화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 추동

6) 예산 총 1,500,000원

- 자료집 2,000원×300부 = 600,000원

- 점자자료집 5부 = 100,000원
- 수화통역 2인×50,000원 = 100,000원
- 현수막 50,000원
- 포스터 및 초청장 500,000원
- 다과비 100,000원
- 사무비, 필름현상·인화비 50,000원

※ 제안 : 수화통역사는 자원활동... 포스터 및 초청장은 팩스로 보내는 방안

● 8차 상집위 논의내용

- 1) 장추련 참여단체가 점자자료집과 수화통역 담당
- 2) 이번 공청회의 초청장은 팩스로 보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전국국토순례 사업계획안

1. 사업목표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전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킨다.
- 장추련 연대의 조직력을 결속하는 기회를 갖는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광역시 중심 이상 지역의 연대 고리를 형성하는 기회로 삼는다.

2. 사업내용

- 장추련 내, 국토순례기획단을 구성한다.
- 주관은 국토순례 경험을 갖고 있는 열린 네트워크가 하되, 실무집행과 재정 지원은 장추련이 책임진다.
- 메인 국토순례팀과 지역 릴레이팀을 둔다.
- 광역시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장애인단체 연대 구축을 중심으로 전국 지역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지역의 장차법 제정에 관한 필요성 인식 강화와 여론 확산 그리고 지역연대 구축 계기를 마련한다.
- 이를 위해 광역시와 시도협회를 중심으로 릴레이식 국토순례 책임과 역할을 연결, 구성한다. (내부 조직강화)
-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문화행사를 지역별로 진행한다.
- 100만인 서명운동과 2003 공동선언 서명 운동을 병행한다.
- 다큐멘터리팀을 구성하여 기록을 남기며, 영상 홍보 및 교육 자료를 제작한다. -> 추후 홍보 사업에 활용한다.
- 실시간 지역 도착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으로 알린다.
- 제주에서 출발, 서울에 도착하도록 한다.
- 총화되는 서울에서 공청회 및 문화이벤트를 한다.

3. 사업추진 계획 및 역할분담

(1) 추진계획

- 논의 지점

(2) 역할분담

4. 사업예산 : 최저 총 1,000 만원 이상 예산 지원 필요

■ 열린네트워크의 의견

열린넷의 입장은...

두번의 행사를 치뤘던 경험이 있지만 비용이 워낙 많이 드는 행사이고 또 많은 시간과 인적 구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의 장추련 제정으로 가능 할지 염려가 됩니다..

물론 하게 된다면 장추련과 연대하여 협조 할 것을 약속합니다...

다만 주관을 열린넷이 하게 된다면 제정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줘야지만 가능 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없자나 있지만 국토순례를 함으로 해서 파생 되는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여겨집니다. 열린넷에서는 참여 대상을 대학생으로 잡았기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만 굳이 대상을 학생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그렇게 되면 가을에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때보다 참여 인원도 많아야 될 것 같구요..

준비 과정에 많은 시간과 조사와 그리고 물질이 지원 되어야 하구요 아울러 충분한 스폰을 얻어내야만 할 것입니다

..장추련의 분담금으로는 어려울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행사때도 그러했었구요..

전체적인 흐름이나 일에 대한 탄력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국토순례가 최상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원만 제대로 된다면야 할만한 게임이죠.
그리고 방송도 장악(?)하든 더 좋겠지요.
각 방송국 다크팀과 조인해서 함께 하는 국토순례....

여기 저희가 치뤘던 국토순례안을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열린네트워크 이 옥현 사무국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1. 사업목표

-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향한 사회적 지지와 공감대 형성
-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정부 압박

2. 사업내용

- 2003년 내에 백만인 지지 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접수한다

3. 사업추진 계획 및 역할분담

(1) 추진계획

- ① 구성단체별로 참여를 독려하여 서명을 받아낸다 - 목표인원 10만명, 1차마감 8/16(토)
- ② 구성단체가 주관하는 대외행사들을 파악하여 일정별로 캘린더화 한다
- ③ 구성단체 행사와 외부 단체가 주관하는 대형 행사 등에서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는다
- ④ 신문 광고를 통해 선전에 주력하고 온라인 서명을 병행한다
- ⑤ 서명과 함께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 가운데 2003선언인을 모집한다
- ⑥ 정기국회 전에 1차 집계하여 기자회견 혹은 성명을 발표한다.
(ex 국민 다수가 참여하여 공감을 표하고 있는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국회가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 ⑦ 국회 상정 여부와 정치권 동향 등을 고려하여 서명용지 사본을 청와대에 접수한다.

(2) 역할분담

구 분	내 용	비 고
추진본부장	- 서명운동의 진행상황을 총괄점검한다. - 서명운동 추진성과를 상임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재정보고(후원금 및 댁지 등 판매대금)와 사회적 분위기 등등 포함
기획분과	비품점검, 용품구입 등	
조직분과	일정체크, 파견인력 확인 등	
홍보분과	선전용 홍보물, 보도자료, 홍보 등	
대외협력분과	외부 행사 파악, 연대 협조 등	

4. 사업예산 : 총 800,000 원

- 사무비품(볼펜, 서명판 등) 구입 : 연간 30만원
- 홍보물 인쇄 : B5*20,000장 = 20만원
- 예비비(책상 대여, 이동 등) : 연간 30만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2003 공동선언

1. 사업목표

-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제정 필요성을 전 사회적으로 알리고
- 장차법의 연대 지평을 넓히며
- 제정운동의 기초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내용

-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원년, 2003년을 기념하여 2003명을 공동선언자로 모집한다.
- 2003명의 공동선언 서명자에게는 1만원씩을 후원금으로 받는다.
- 2003명이 모두 모집되면 장추련 상징 엠블럼에 2003명의 이름이 모두 들어가도록 하여 우리나라 장애인인권운동의 역사적인 기념으로 남긴다.

3. 사업추진 계획 및 역할분담

(1) 추진계획

- ① 구성단체별로 2003 공동선언 용지를 나누어주고 선언자를 모집한다. - 목표인원 2003명
- ② 2003명 중 500여명 정도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홍보효과가 있는 타겟그룹을 정해서 서명을 받아 이를 기회로 장차법 제정에 관한 기획된 홍보를 동시에 한다.
- ③ 나머지 1,503 명은 100만인 서명운동과 같이 동시에 서명을 받는다.
- ④ 장추련 내에서부터 2003 공동선언자를 먼저 받고 단체별로 명수를 나누어 모집한다.
- ⑤ 오는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까지는 2003명을 다 모집해 2003 공동선언을 공동서명자 이름과 함께 다시 한 번 선포한다.
- ⑥ 장추련 엠블럼에 2003명 공동서명자 이름을 모두 넣어 기념한다.

(2) 역할분담

구 분	내용	비고
집행위원장	- 2003선언의 진행상황을 총괄 점검한다. - 서명운동 추진성과를 상임집행위원회에 보고한다.	
기획분과	예산 책정 및 집행	
조직분과	진행체크, 파견인력 확인 등	
홍보분과	선전용 홍보물, 보도자료, 홍보 등	
대외협력분과	자원활동가 조직, 외부 행사 파악, 연대 협조 등	

4. 사업예산 : 총 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참여단체 실무자 workshop

1. 사업목표

- 내부 검토를 통한 법안의 수정 보완
- 참여단체의 폭넓은 공감과 지지

2. 사업내용

- (1) 일시 및 장소 : 2003. 9. 오후 2-6시, 대방동 여성플라자
- (2) 참가대상 : 구성단체 및 관련단체의 소관부서장과 실무책임자
- (3) 프로그램
 1. 법안과 법제정의 쟁점
 - 1) 법제정의 필요성과 법안의 주요골자 - 박종운 법제정전문위원장
 - 2) 법제정의 쟁점논의
 - (1) 총칙기구팀
 - (2) 차별금지팀
 - (3) 권리구제팀
 - (4) 여성팀
 2. 이후 전망과 활동의 방향
 - 1) 법제정운동의 동향과 전망 - 상임공동집행위원장
 - 2) 활동계획의 공유
 - (1) 중앙차원의 활동
 - (2) 지역차원의 활동
 3. 참가자 토론 및 발표

3. 사업 추진계획 및 역할분담

구 분	내 용
집행위원장	총괄점검
기획분과	예산 책정 및 집행
조직분과	진행체크, 구성단체 참여확인
법제위원회	실행위 단위에서 종합정리된 내용의 자료를 준비하고 설명한다

4. 사업예산 : 230,000원

- 장소사용료 150,000원
- 복사, 촬영 등 자료비 : 50,000원
- 음료, 식수 등 : 30,000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홍보사업(홈페이지구축사업)

1. 사업목표

- 온라인을 통해 장추련 활동과 장차법 제정에 대한 국민공감대 및 지지 형성

2. 사업내용

- 장추련 및 장차법 홍보극대화를 위한 (임시)웹사이트 구축

3. 사업추진 계획 및 역할분담

(1) 추진계획

- 5.22일-웹사이트맵을 중심으로 디자인 구상 및 기획
- 5.26일~6.9일-웹사이트 구축 작업
- 6.10일-구축작업완료

(2) 역할분담

구 분	내 용	비 고
디자인	홈페이지 디자인 만들기-조병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기술	기술지원 및 웹호스팅(한국장애인재활협회)	
관리	한국장총 홍보과	

4. 사업예산 : 총 50,000원(도메인등록비용)

※ 웹사이트 구축

- 정식 구축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분석과 장기적인 계획 그리고 소요되는 예산이 있어야 함(예산은 필요기술에 따라 상이해질 수 있으나 개발을 전적으로 외주에 의존할 경우 200백 이상이 소요됨)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외협력사업

1. 사업목표

-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제정 필요성을 전 사회적으로 알리고
- 인권운동 및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연대 지평을 넓히고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2 사업내용 (추진계획 포함)

■ 대외 협력

가. 시민단체 장추련 참여 독려

- 1차 : 6월 11일 이전까지 (공청회를 계기로)
- 2차 : 2003년 9월까지
- 3차 : 2003년 12월까지
- 4차 : 2004년 8월까지 마감(예정)

나. 국제 네트워크

- : 장추련 단위의 여러 사업들을 영문을 통해 여러 사이트에 올리기
특히 관련 있는 외국의 장애인 사이트에 올리기
장추련 사업 중 외국의 장차법 제정 활동가 섭외 시 역할...

■ 자원개발

가. 자원활동자 개발 및 관리

- 2003년 장차법 완성(초안) 때부터 각 대학 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동아리 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학생들에게 장차법에 관한 교육을 하고 이를 자원으로 유도함.
(9월경부터 시작-2004년 9월까지 지속)
-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자원활동자 개발

나. 모금 개발 및 관리

4. 사업예산 : 총 원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운영규정(안)

제1장 총칙

제01조(목적) 본 연대는 실효성 있는 차별시정과 권리구제가 가능하고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02조(명칭) 본 연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이라 약칭 한다)라 부르고, 영문으로는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s Solidarity in Korea(약칭 DDASK)로 표기한다.

제03조(소재지) 장추련의 주 연락 사무소는 기획분과가 소재한 단체로 하며, 공식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일상의 업무를 공유한다.

제2장 조직

제04조(구성단체) 장추련은 다음 각 호의 단체로 구성된다.

1. 회원 7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 또는 비법인 장애인단체
2. 장추련의 목적과 의의에 동의하는 시민·사회·인권·노동 관련 제 단체

제05조(가입절차) 가입을 희망하는 단체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출석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일반 의결정족수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임

제06조(권리) 구성단체는 장추련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에 관하여 참여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07조(의무) 구성단체는 집행위원회와 상임집행위원회가 공식 의결한 사항을 준수하며, 소정의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08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성단체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목적에 반하는 운동을 펼치는 단체
2. 6개월 이상 구성단체 분담금을 단 1회도 납부하지 않은 단체
3. 기타 상임집행위원회에서 제명을 결의한 단체

* 제명에 관해서는 집행위원회의 권한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제09조(기구) 장추련은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집행위원회
2. 상임집행위원회
3. 법제정전문위원회
4. 실무분과위원회
5. 기타 단기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신설된 특별사업추진단

제3장 집행위원회

제10조(구성) 집행위원회는 각 구성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 구성한다.

제11조(역할과 기능) “장추련”의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장추련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장추련이 제출할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의결
3. 운영규정의 의결 및 개폐
4. 상임공동대표의 선임 및 해임
5. 상임집행위원의 선임 및 해임
6. 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7. 상임집행위원회가 상정한 안전 승인
8. 기타 운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

* 제명에 관한 건

제12조(회의소집)

- ① 재적 위원 1/3 이상이나 상임집행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운영상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상임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장소, 일시, 안건을 명기하여 통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의결정족수)

- 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원은 다른 위원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개별 안건 의결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정족수)

- ① 장추천 법안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해산에 관한 사항은 재적 위원 2/3 출석과 출석 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상임집행위원회

제15조(구성)

-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그룹별로 선출된 각 3인과 실무분과장 4인, 법제정전문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1.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3인)
 2.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3인)
 3. 중증장애인분야 (3인)
 4. 장애여성분야 (3인)
- * 여성장애인과 장애여성 중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는 일단 보류하고, 조 육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다.
5. 위 각 호 이외의 구성단체 (3인)
- ②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단체 및 분야에서 위원을 선발하여 파견한다.

제16조(기능과 역할)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실무분과장의 승인
2. 신규 단체의 가입 승인과 구성단체의 자격 상실
3. 고문 및 자문위원의 위촉
4. 사업계획, 사업실적, 예산, 결산안 심의
5. 공동상임집행위원장 선출
6. 장추련 법안의 심의
7. 기타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7조(회의) 재적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나 기타 운영상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 상임집행위원장이 소집하며,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관해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5장 법제정전문위원회

제18조(법제정전문위원회)

- ① 법제정전문위원회(이하 '법제위'라고만 한다)는 상임집행위원회 산하에 두며, 장추련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만들고, 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진행한다.
- ② 법제위원장은 법제위에서 선출한다.
- ③ 법제위는 장추련의 목적과 의의에 동의하며, 법안 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 ④ 필요할 경우에는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고문 및 자문단을 위촉 할 수 있다.

제6장 실무분과위원회

제19조(구성)

- ① 사업의 집행을 위해 실무분과를 둘 수 있으며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분과 : 사업기획, 예결산 집행, 총괄
 2. 조직분과 : 회의소집, 조직강화 및 교육, 인력동원

3. 홍보분과 : 보도자료, 대외창구, 외부홍보의 조정 및 활성화, 웹서비스

4. 대외협력분과 : 외부인적·물적 자원의 유입, 외부연대, 국제협력 등 교류사업

② 실무분과를 총괄 지휘하는 분과장은 상임집행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③ 실무분과위원회는 상임집행위원장과 각 분과장으로 구성된다.

제7장 재정

제20조(재정) 장추련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구성단체 분담금
2. 특별회비
3. 후원금
4. 사업수익금
5. 기타

제21조(보수의 제한) 장추련의 각 위원, 실무자 등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행비, 숙박비 등 장추련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직무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 경비) 실무분과 운영을 위한 경상 경비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해산

제23조(해산) 장추련의 해산일은 대한민국 정부가 독자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 공포하는 날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 혹은 확대 재편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으며, 해산에 관한 모든 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을 준용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집행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규정의 의결 이전에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보론>

*제0장 정치적 입장

제01조(정치적 입장)

- ① 상임집행위원과 법제정전문위원장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공직에 취임할 경우,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에는 사임하여야 한다.
- ②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닌 경우,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표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장애인차별금지법 입법과 관련한 대정부입장에 있어서 장추련은 다음 각 호의 입장을 기본으로 한다.
 1. 구성단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추련에 대표성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정부 부처와의 개별적인 접촉은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구성단체들과 협의하여 장추련 차원에서 진행되도록 힘쓴다.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의원입법을 기본으로 하되, 집행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